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RIGOLETTO

정보공개서 등 록 번 호 : 2015004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5.01.1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3.11.30

<http://www.rigoletto.co.kr/>
dining5212@naver.com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정 보 공 개 서

‘(주)다이닝팩토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다이닝팩토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번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2길 15, 6층(논현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TEL : 1600-4773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FAX : 02-3452-109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가맹영업팀) : 1600-4773

목 차

- I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 가맹본부의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가맹사업 현황
- III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 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식회사 다이닝팩토리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외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2길 15, 6층(논현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5. 04. 23.	2015.06.08.	이광호	1600-4773	02-3452-1097
	법인등록번호	110111-5705714	사업자등록번호	709-86-0008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와 특수관계인의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주)다이닝팩토리 이광호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외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2길 15, 6층(논현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5.06. ~ 현재	이광호	1600-4773	02-3452-1097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감사	(주)다이닝팩토리 이소윤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외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2길 15, 6층(논현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6.01. ~ 현재	이광호	1600-4773	02-3452-1097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계열회사	(주)브라보이노베 이선/이광호	브라보치킨피자 외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2길 15, 6층(논현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6. 10. ~ 현재	이광호	02-1522-9856	02-3452-1097
	법인등록번호	110111-6184206	사업자등록번호	551-81-0050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주)리조텔	리조텔 거기조아	2022.06.3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2길 15, 6층 일부	이광호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주)지강기획	보슬보슬	2021.08.23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72길 16, 4층 4794호	이대현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리골레토 시카고피자]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
상 호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점	/
서 비 스 표	RIGOLETTO	등록번호 4102549750000(2013.03.25)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096,808	522,118	1,574,689	3,968,605	-93,660	-98,231
2022년	2,645,124	349,852	2,295,272	3,084,720	779,929	720,582
2023년	3,440,339	407,807	3,032,531	2,446,576	838,659	737,258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리골레토시카고피자 2%, 동경야시장 4%, 장인닭갈비 45%, 에그셀런트 48%, 미트맨 1%로 추산하였습니다.

☞ 당사의 동경푸줏간, 전설의켄터키, 리조텔거기조아, 압구정곱떡은 가맹점이 없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명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이광호	대표	2021.07.31 ~ 현재	사내이사	회사업무 총괄
			2016. 1. ~ 2021.07.30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관련	이소윤	감사	2016. 1. ~ 현재	감사	회사업무 감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상근	비상근	5
	2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가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했던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다이닝팩토리/ 동경야시장	가맹사업경영	2016. 04 ~ 현재	동경야시장(등록번호2015007) 라는 영업표지의 포장마차 경영
	(주)다이닝팩토리/ 장인닭갈비	가맹사업경영	2016. 09. ~ 현재	장인닭갈비(등록번호:20160082) 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주)다이닝팩토리/ 동경푸줏간	가맹사업경영	2016. 10. ~ 현재	동경푸줏간(등록번호:20170008) 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주)다이닝팩토리/ 크랩팟	가맹사업경영	2017. 02.~ 2018. 03	기타외식사업
	(주)다이닝팩토리/ 전설의센터키	가맹사업경영	2018. 06. 28. ~ 현재	전설의센터키(등록번호:201807 42)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 경영
	(주)다이닝팩토리/ 보슬보슬	가맹사업경영	2018. 08. ~ 2021.08.23	보슬보슬(등록번호:20180877) 이라는 분식사업경영
	(주)다이닝팩토리/ 에그셀런트	가맹사업경영	2019.02.17 ~ 현재	에그셀런트(등록번호:20190835) 이라는 영업표지의 패스트푸드사업경영
	(주)다이닝팩토리/ 압구정곱떡	가맹사업경영	2020.04. ~ 현재	압구정곱떡(등록번호:20200510) 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경영
	(주)다이닝팩토리/ 미트맨 (MEATMAN)	가맹사업경영	2022.04. ~ 현재	미트맨 (MEATMAN)(등록번호:202 15864)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경영
	(주)다이닝팩토리/ 리조텔거기조아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예정	리조텔거기조아(등록번호:2019 1320)이라는 영업표지의 숙박업사업경영
계열회사	(주)브라보이노베 이션/ 브라보치킨피자	가맹사업경영	2016. 10. ~ 현재	브라보치킨피자(등록번호: 20161309)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경영
	(주)브라보이노베 이션/ 동방볼패	가맹사업경영	2017. 06. ~ 현재	동방볼패(등록번호:20170730) 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경영
	(주)브라보이노베 이션/달려라짬뽕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예정	달려라짬뽕(등록번호:20210142) 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경영
	(주)브라보이노베 이션/꾸꾸미랩소 디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예정	꾸꾸미랩소디(등록번호:202110 57)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경영

	(주)브라보이노베이션/터치쿡	가맹사업경영	2021.05 ~ 현재	터치쿡(등록번호:20211056)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사업경영
계열회사	(주)리조텔/리조텔거기조아	가맹사업경영	(주)다이닝팩토리에 양도	리조텔거기조아(등록번호:20191320)이라는 영업표지의 숙박업사업경영

☞ 당사의 보슬보슬은 2021.08.23.자로 (주)지강기획에 양도하였습니다.

☞ 당사는 계열회사의 리조텔 거기조아를 2022.06.30.자로 양수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사용허락기간)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가맹계약에 정 한 바에 따라 본 서비스표를 사용할 권리	등록일자 2013.03.25.	등록번호 4102549750000	안순애	2023.03.25. (2023.02.30.)

- ▶ 당사는 “리골레토” 지식재산권의 출원에 관한 서류를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당사에 방문하여 일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기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책에 따라 상기의 지적재산권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ipris.or.kr/>)

II. 가맹본부의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가맹사업 현황

1.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5년 01월 25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없음)

2.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이름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이광호	2014년 12월 ~ 2015년 07월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4길 37 (역삼동, 1층)
주식회사 리골레토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이광호	2015년 07월 ~ 2016년 01월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33, 10층 (논현동)
주식회사 다이닝팩토리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이광호 이대현	2016.01.~ 2021.07.3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2 길 15, 6층(논현동)
주식회사 다이닝팩토리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이광호	2021.07.31 ~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2길 15, 6층(논현동)

3.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업종

영업표지	업종	
리골레토시카고피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피자	피자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전국 및 16개 광역 지자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총수

(단위: 개)

지역	2021년도 말			2022년도 말			2023년도 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8	8	-	8	8	-	7	7	-
서울	1	1	-	1	1	-	-	-	-

부산	1	1	-	1	1	-	1	1	-
대구	-	-	-	-	-	-	-	-	-
인천	1	1	-	1	1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1	1	-	1	1	-	1	1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4	4	-	4	4	-	4	4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8	-	-	-	-	8
2022년	8	-	-	-	-	8
2023년	8	-	-	1	-	7

6.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다이닝팩토리	동경야시장	20151007	주점	23/0	14/0	7/0
		장인닭갈비	20160082	한식	12/0	11/0	12/0
		동경푸줏간	20170008	기타외식	0/0	0/0	0/0
		전설의센터키	20180742	치킨	0/0	0/0	0/0
		보슬보슬	20180877	분식	-	-	-
		에그셀런트	20190835	패스트푸드	76/1	50/1	34/0

				드			
		압구정곱떡	20200510	분식	6/1	0/0	0/0
		미트맨(MEATMAN)	20215864	기타외식	0/1	3/1	2/0
계열회사	(주)브라보이 노베이션	리조트거기조아	20191320	서비스업	-	0/0	0/0
		브라보치킨피자	20161309	외식업	13/0	9/0	1/0
		동방불패	20170730	외식업	4/0	2/0	2/0
		달려라짬뽕	20210142	기타외식	0/0	0/0	0/0
		쭈꾸미랩소디	20211057	기타외식	0/1	0/1	0/1
계열회사	(주)리조트	터치쿡	20211056	기타외식	1/18	7/0	4/0
		리조트거기조아	20191320	서비스업	0/0	-	-

※ 당사의 보슬보슬은 2021.08.23.자로 (주)지강기획에 양도하였습니다.

☞ 당사는 계열회사의 리조트 거기조아를 2022.06.30.자로 양수하였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7	485,129	14,700	624,590	17,349	342,524	11,648	5곳 산정
서울	-	-	-	-	-	-	-	-
부산	1	-	-	-	-	-	-	5곳 미만
대구	-	-	-	-	-	-	-	-
인천	1	-	-	-	-	-	-	5곳 미만
광주	-	-	-	-	-	-	-	-
대전	1	-	-	-	-	-	-	5곳 미만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4	-	-	-	-	-	-	5곳 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	---	---	---	---	---	---	---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포스데이터에 따른 매출액입니다.

* 당사는 가맹점이 5곳 미만인 지역과 매출액 확인이 안되는 가맹점 2곳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하는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리골레토 시카고피자]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3년	7	2,898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별도의 지역본부(지역총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의 전년도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47,238	-	-	
광고 및 판촉	비공개	비공개	47,238	-	-	

☞ 당사는 시카고피자 외에 다른 가맹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 중 시카고

피자에 사용한 광고. 판촉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KEB하나은행]에 예치 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KEB하나은행	강남역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05	02-534-031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하나에스크로(하나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보유하고 계신 공인인증서로 하나에스크로(하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프랜차이즈 B2B” 를 클릭한 다음, 부여 받은 아이디로 로그인 후 예치신청을 하시 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기관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 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를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 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식회사 다이닝팩토리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 개월 소요

I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해당없음 :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간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략 아래의 표와 같은 금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비용 중 예치여부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역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 맹 비	1.가입비 및 영업표지대가	17,600	계약체결 당일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인도된 제품 및 서비스의 비용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 됨
	2.점포선정실사의 대가	1,650			
	3.인력지원/매뉴얼 대가	2,750			
	소계	22,000			
교 육 비	개점 전 교육비	3,300	계약체결 당일	교육 실시1일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 실시 이후 반환 안 됨
오픈행사 비용	개점 전 오픈행사비	1,100		오픈 행사 전 해약 시 반환	오픈행사 이후 반환 안 됨
총계		26,400			

(2)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 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3,000	계약 체결 당일	계약종료 후 공급품 대금 미지급, 손해배상, 위약금, 영업표지 등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시 정산 후 반환	직전 년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상품 등의 대금 (원부재료 대금포함) 의 3배 이내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가맹비	22,000
개점 전 최초교육비	3,300
계약이행 보증금	3,000
오픈행사비	1,100
합계	29,400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0]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66㎡(20평형)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인테리어	협력업체	39,600	1,980	-계약시:50 % -중도금:30 % -완료시:20 %	공사 전 계약취소	공사 후	특수상권 진행시 평당 22만원추가
의탁자	협력업체	5,500		-구입시:100%	제작 전 계약취소	제작 후	/
그릇 및 흙 지원	협력업체	3,300		-구입시:100%	입고 전 계약취소	입고 후	/
주방기물	협력업체	16,500		-구입시:100%	입고 전 계약취소	입고 후	/
간판	협력업체	1,650		-주문시:100%	제작 전 계약취소	제작 후	기본 채널IM기준 감리하에 직접시공가능
메뉴판/유 니폼/X배너	당사	1,100		-구입시:100%	입고 전 계약취소	입고 후	/

초도물품비	협력업체	3,300		구입시: 100%	입고 전 계약취소	입고 후	
총계		70,950	3,548				

- ▶ 지급대상은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사업장의 운영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대략적인 가격으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은 시장가격의 변동과 매장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지방 인테리어 진행시 인테리어 견적의 3%가 출장비로 발생합니다.

※ 인테리어 공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시공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도 반드시 모델점을 방문하여 견학 후 [리골레토 시카고피자]의 컨셉트에 맞도록 시공하며, 영업장의 실측된 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을 준비하여 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이 경우 본사의 실측도면과 인테리어 시공도면 등의 사용과 감리에 따른 비용으로 3.3제곱미터 마다 660,000원(부가세 포함)과 도면제공비로 ₩3,300,000(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별도사항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시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입상, 급기)공사, 소방 설비, 냉난방기 등냉/난방기, 홀닥트, 의자탁자, 폴딩도어, 도시가스설치, 전기증설, 추가 간판설치, 기타집기

※ 유의사항

- * 위 사항은 점포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인테리어를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예 유의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 리모델링은 간판비용과 기타 집기 비용을 제외하고 평당 55만원(부가세포함)입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벌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벌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20%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시간 이후 5일 이내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40%
계약 체결 후 5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정보공개서상의 예치금의 60%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 입지선정의 주체는 가맹희망자입니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점포면적에 따른 외견상의 조연과 해당지역의 부동산 업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며 당사에 점포물색을 의뢰시 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귀하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선정이 완료되어 귀하가 입지 선정의 주체가 됩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비고
가맹점 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 후견인이 아닐 것	가맹점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음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설비/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한 내역은 가맹계약시 가맹점별 첨부한 목록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공급업체는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계약에 명시된 대로의 이행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66㎡(2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불가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330	매월 5일 또는 25일	소멸성	소멸성	-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50% 가맹점사업자50%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광고 실시 전	광고 시행 이후	가맹점사업자간 균등부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교육 개시 후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Ⅶ -1에서 정한 바 에 따라 협의하 여 결정	좌동	좌동	변경 후	
인테리어,시설, 각종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Ⅶ -1에서 정한 바 에 따라 협의하 여 결정	좌동	좌동	교체 후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지급 하는 날까지	.	.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내역은 가맹점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당사와 가맹점주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 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단위:천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

▶ 당사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회계처리 및 재고관리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관리, 감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빈도/시기는 기본 월1회로 정하고 있으나 당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맹점주와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와의 쌍방 간 계약 갱신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며, 본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의 재계약의 연장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갱신 혹은 재계약 이후의 구체적 계약 내용은 갱신 당시의 신규가맹계약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후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새로운 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의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에서 탈퇴할 수 경우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계약 해지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상표 및 서비스표 등의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더 이상 그 독점적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귀하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객관적으로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에는 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원칙적으로 당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귀하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귀하는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양도인)는 최초 가맹계약 시 가맹본부에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계약의 종료일(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존 채무(물품대금포함) 및 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액을 상환하지만, 보증금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 채무액을 당사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가맹비·계약이행보증금·교육비를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7]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의 추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5) 계약 종료 후의 조치사항

당사와 귀하 사이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사로부터 부여 받은 영업 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의 비용은 계약이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가 부담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의 종료 즉시 당사에 대한 채무잔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잔존 채무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의 상호 및 상표, 기타 구조물 등 당사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는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시스템 및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매뉴얼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 등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당사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귀하가 계약 종료에 따른 위의 조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지체1일당 3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니,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계약종료 후 조치 미이행시의 위약금조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거래상대방은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 다른 품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그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 · 하한

☞ 별첨2와 같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리골레토 시카고피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

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이익은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가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 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전연도 수취한 경제적이익은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이외 추가 상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시카고피자 8인치	왼쪽에 기재된 상품 및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1회 서면 시정 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시카고피자 10인치			
시카고 베이크			
토피류			
통 양상추 샐러드			
리코타치즈 샐러드			

어니언링			
소세지			
포테이토 프라이			
감자튀김			
가지구이			
수입맥주류			
음료류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가적인 제한사항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해지
다른 가맹점 사업자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 원)	가격 통보방법	비고
시카고피자 8인치	19,000	변경 시 월별통지	
시카고피자 10인치	29,000		
시카고 베이크	15,000		
토판류	1,000		
통 양상추 샐러드	7,000		
리코타치즈 샐러드	7,000		
어니언링	8,000		
소세지	8,000		
포테이토 프라이	5,000		
감자튀김	5,000		
가지구이	5,000		
수입맥주류	4,000~6,000		
음료류	3,000		

※ 권장가격 이외에 event 할인, 프로모션 할인, 쿠폰행사 등 가격할인 행사에 관한 사항은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당사와 가맹점주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강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

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시카고피자 전문점	가맹본부	계열회사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브라보치킨피자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기준 보행거리 200m 배달의 경우 영업지역 기준 1.5km까지 가능 (배달 플랫폼에 매장 노출 시 리골레토시카고피자○○점 필수노출)	->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특수상권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의 영업지역이 특수공간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공간만 귀하의 영업지역에 해당하며 이를 벗어나는 곳은 영업지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쇼핑몰, 양판점, 관공서, 지하상가, 대학, 병원, 전철역, 기차역, 터미널, 경기장, 휴게소, 종합병원, 공항, 호텔, 놀이공원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 상권을 의미합니다.

▶ 당사가 온라인상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인하여 해당 상품,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기존 영업지역을 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기간

[리골레토 시카고피자]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갱신 시에는 계약이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 D-day)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단,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32조 1항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맹계약의 갱신 당시에 물품공급 중단 사유 어느 하나에 귀하가 해당하는 경우	23조 1항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가 개점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을 못하거나 기타 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3조 1항 1호
○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33조 1항 2호
○ 사전 동의 없이 당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3조 1항 2호
○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에 손해를 끼친 경우	33조 1항 2호
○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사전승인 없이 점포의 소재지, 상호, 사업자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	33조 1항 2호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신규교육 또는 정기교육 및 비정기교육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 거부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로열티, 물품대금, 시스템사용료, 공사견적금액, 기타 본 계약에 따라 당사 또는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5% 이상을 연체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식품위생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의 위생 점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게을리 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POS등의 설치(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2호
○ 원부자재의 자점사입 기타 판매금지 조항(제21조)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2호
○ 귀하 또는 귀하의 직원이 당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33조 1항 2호

○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33조 1항 2호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당사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33조 1항 2호
○ 서면동의 없이 가맹점운영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	33조 1항 2호
○ 고객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3조 1항 3호
○ 기타 가맹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가맹계약에 따른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4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3조 2항 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3조 2항 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3조 2항 3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3조 2항 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3조 2항 5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33조 2항 6호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3조 2항 7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3조 2항 8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3조 2항 9호

(5)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가.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 나.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본 계약서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귀하의 동의 없이 해당 조문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라. 또한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당사의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양도 60일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면담 후 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TEL 1688-5212)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가맹비·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법적효력 발생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내 서면요청→승인여부통지→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당사 승인 시 가능	상동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잔여 계약기간을 부여하되, 가맹비는 면제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개점 전 최초교육비는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대리인, 위탁인 또한 같습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후 1년 동안 귀하가 [리골레토 시카고피자]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시카고피자 전문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가량 소요) → 허가여부 통지 완료	문의: 당사 (TEL 1600-4773)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리골레토 시카고피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제한 없음	매월 26일 이상, 주6일 이상 점포를 개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 ▶ 귀하께서 합리적인 사유로 휴업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 휴업하기 7일전까지 통지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귀하가 특정일에 점포를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의 종업원의 수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가맹점을 관리·감독하는 빈도/시기는 기본 월1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당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포를 점검하고 본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프로그램취급여부, 청결 및 정돈 상태, 서비스 상태, 매장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의 월 매출, 연 매출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점포 감독은 본사에서 미리 제공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쌍방이 서명하여 가맹본부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광고비용은 다음 표와 같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광고 실시 최소 2주일 이전에 그 광고의 성격과 전체 비용 및 각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통지하고 “을”은 통지 수령일 2주 이내에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광고	브랜드광고	50%	50% (전체가맹점)	산출의 근거를 서면을 통해 제시	전국광고(TV, 라디오, 5대 일간지 등)
	서비스/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100%	없음	해당 없음	
지역광고	가맹점매출증진	50%	50% (지역가맹점)	해당 없음	지역단위 각 매체광고
개별광고	가맹점매출증진	없음	100%	해당 없음	단독광고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가맹점부담액 제시→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행사 시행→종료 후 최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시 전체

				충분담금 확정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상동	상동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상동	상동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상동	상동	

▶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으며, 귀하는 당사가 위와 같이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전국 규모 혹은 자신이 속한 지역규모의 광고 및 판촉활동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촉의 경우에는 찬성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와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사업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 및 판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광고나 판촉 활동 등을 위한 팸플렛, 전단지, 카다로그, 쿠폰 등의 제작은[리굴레토 시카고피자]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당사에 그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판촉, 홍보 매뉴얼 그밖에 영업활동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 등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 귀하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제34조(계약종료 후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 당사가 지정한 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공급받거나, 자신이 임의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35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제34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5항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별로 4,000만원을, 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와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별로 각 2,000만원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귀하는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당사나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5일정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8일)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55일 내외	100,35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담접수 - 가맹희망자 의욕자질검토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안내	D-55	-
상담 및 정보공개서 제공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D-54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등	필요시 실시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체결의사를 밝힌 가맹희망자에 한하여 - 가맹계약 체결	D-39 D-38	29,400
인테리어시공	- 도면, 입면, 파사드 작업 - 투자비 산출 및 인테리어 계약 (계약금40%, 중도금 50%, 잔금20%) - 주방시설 및 집기류 산출	D-37~7(30일)	70,950 (교육비는 최초가맹금에 포함)
교육	- 매장운영 기본 교육	D-10~3일	
설비 및 물품 공급	- 물품 등 공급 - 인허가사항 점검 - 간판 제작 (개별 계약)	D-3~1(3일)	
영업시작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표에 있는 비용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외에 발생하는 실비부담은 당사와는 별도로 가맹점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상의 소요금액은 점포 임대관련 비용, 건물 개·보수공사, 철거공사, 전기승압 및 분전함, 가스가설공사, 상하수도공사, 닥트(입상,급기)공사, 소방설비, 냉난방기/오디오 구입비용은 별도입니다.

2. 분쟁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 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특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판촉 및 신규고객 창출, 소비자트랜드 고객관리, 위생관리, 조리관리,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	가맹본부 부담	문의 : 당사

		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판촉 및 신규고객 창출, 소비자트랜드 고객관리, 위생관리, 조리관리,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당사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없음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리골레토 시카고피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리골레토 시카고피자]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부가세포함)	비고
개점 전 최초교육	메뉴교육	8시간(1일) X 5일 = 40시간	최초 가맹금 중 교육비에 포함	/
	오픈교육			
	서비스교육			
정기교육		3시간	실비	외부 강사 초빙 시 추가 실비 발생
비정기교육		3시간	실비	

3.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당사자입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원하여 다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비·숙박비·교통비 등 제반 비용도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여 당사에 교육 및 훈련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 운영자는 당사의 기준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개점이 연기될 수 있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점 이후 당사가 정하는 정기교육 및 비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후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2			
3			

☞ 당사는 리골레토시카고피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끝-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600-477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리고레토 시카고피자 전용상품 리스트

(2024년 4월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별첨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3. 2023년 2022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1년 재무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